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방	송	통	신
발	전	기	금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개 요	1
1. 총 괄	1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1
나. 2024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3
2. 일반회계	5
가. 세입 결산	5
나. 세출 결산	6
3. 방송통신발전기금	9
가. 일반 현황	9
나. 자금 조달	11
다. 자금 운용	14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17
마. 재무 상태	18

II. 검토의견	19
1. 기획조정관 소관	19
<일반회계>	19
1) 벌금 및 과료(56-561), 과태료(56-563), 가산금(58-581): 수납률의 연례적인 저조 개선 필요	19
2) 본부(총액대상)(7101-101):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부적정 등	28
3)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	37
<방송통신발전기금>	41
4)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135-301): 정책연구용역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등	41
2. 방송정책국 소관	47
<일반회계>	47
5)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 UHD 전환 문제 개선 필요 등 ..	47
6)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	58
<방송통신발전기금>	64
7) 국악방송지원(3131-304):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한 방송편성프로그램 등 제작 필요	64

3.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소관	68
<방송통신발전기금>	68
8)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는 예산편성 부적절	68
4. 방송기반국 소관	73
<방송통신발전기금>	73
9) OTT산업 경쟁력 강화(3134-341): 사업방식의 재설계 필요	73

I. 개 요

1. 총 괄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됨.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¹⁾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관리함.
-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의 경우 수납액²⁾은 총 9,867억원으로, 예산(계획) 1조 196억원 대비 96.8% 수납되었음. 수납액 중 일반회계는 8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9,786억원임.

< 세입 및 수입 결산 총괄(2024)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계획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예산 대비 수납률 (C/A)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C/B)
총 수 입	1,019,670	1,071,213	986,693	3,800	80,720	96.8	92.1
-일 반 회 계	30,844	89,283	8,075	3,800	77,408	26.2	9.0
-방송통신발전기금	988,826	981,930	978,618	-	3,312	99.0	99.7

*예산액 : 2024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방송통신발전기금 수납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액을 의미함.

○ 한편, 일반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합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2,485억원으로, 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 2,504억원 대비 99.2% 집행되었음. 집행액 중 일반회계는 48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05억원임.

< 세출 및 지출 결산 총괄(2024)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계획액)	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총 지 출	250,260	250,393	248,484	317	1,592	99.2
-일 반 회 계	49,118	49,251	48,006	317	928	97.4
-방송통신발전기금	201,142	201,142	200,478	-	664	99.7

주: 방송통신발전기금 집행액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 정부내부거래, 여유자금운용 제외)임.

나. 2024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회계연도에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등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및 공익적 방송시설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음.
-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해 전국민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방송의 다양성·공공성 및 방송통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음.
-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성과목표 4개 중 3개를 달성하였고, 1개는 달성하지 못하였음.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익적 방송 프로그램 만족도가 성과목표 대비 101.1% 달성하였으며, 방송산업 발전을 통해 시청자 복지 추구를 목표로 하는 미디어환경 개선 및 복지 제고 기여도는 성과목표 대비 97.9%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2024) >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	결산액	집행률 (현액대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전략목표 I :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251	1,251	1,245	99.5	-
·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I-1)	947	947	942	99.5	○
·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I-2)	304	304	301	99.0	○
전략목표 II :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을 조성한다.	912	912	907	99.5	-
· 방송산업 발전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추구한다.(II-1)	867	867	861	99.3	X
· 방송통신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II-2)	46	46	45	99.8	○
계	2,163	2,163	2,152	99.5	-

주: 성과관리대상 사업은 비대상 사업인 인건비, 기본경비가 제외되므로 총 재정지출(예산 2,504억원)보다 규모가 작음.

자료: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2. 일반회계

가. 세입 결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8억 4,400만원, 징수결정액은 892억 8,300만원임. 수납액은 80억 7,500만원으로 예산 대비 26.2%, 징수결정액 대비 9.0%임.

< 일반회계 세입 결산(2024) >

(단위: 백만원)

세입과목		예산 (A)	징수 결정 (B)	수납 (C)	미수납	예산 대비 수납률 (C/A)	징수 결정 대비 수납률 (C/B)
관	항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9	172	162	10	415.4	94.2
경 상 이전수입	벌금, 물수금 및 과태료	29,613	57,622	6,931	48,350	23.4	12.0
	가산금	141	30,606	197	28,950	139.7	0.6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비 집행잔액 등)	979	807	709	98	72.4	87.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71	75	75	-	105.6	100.0
	잡수입	1	1	1	-	100.0	100.0
합 계		30,844	89,283	8,075	77,408	26.2	9.0

나. 세출 결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92억 5,100만원 대비 97.5%인 480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3억 1,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억 2,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은 예산현액 151억 2,100만원 중 146억 3,800만원(96.8%)을, ‘방송통신 행정지원’은 예산현액 341억 3,000만원 중 333억 6,800만원(98.1%)을 집행하였음.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은 통신시장의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며 KBS 및 EBS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방송통신 행정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성격임.

< 일반회계 세출 결산(2024) >

(단위: 백만원, % / □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구 분	2024					2025
	예산	예산현액*	집행	불용	집행률	예산
합계	49,118	49,251	48,006	928	97.5	48,738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15,121	15,121	14,638	483	96.8	15,360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	8,033	8,033	8,012	20	99.7	8,061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2,499	2,499	2,497	2	99.9	1,940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098	2,098	2,080	18	99.1	2,705
- 안전한위치정보이용환경조성	215	215	215	-	100.0	215
- 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	3,221	3,221	3,221	-	100.0	3,201
○ 방송인프라지원	7,088	7,088	6,625	463	93.5	7,299
-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5,766	5,766	5,642	124	97.8	6,089
- EBS 방송인프라 개선	1,322	1,322	983	339	74.4	1,210
□ 방송통신행정지원	33,997	34,130	33,368	443	98.1	33,378
○ 본부인건비	21,672	21,740	21,707	33	99.8	22,545
- 본부(총액대상)	21,672	21,740	21,707	33	99.8	22,545
○ 소속기관인건비	2,744	2,790	2,780	10	99.6	2,862
- 방송통신사무소 인건비(총액대상)	2,744	2,790	2,780	10	99.6	2,862
○ 본부기본경비	4,234	4,326	3,924	103	92.7	3,137
- 운영지원과(총액대상)	1,294	1,234	1,169	46	94.7	1,087
- 기획조정관(총액대상)	176	163	162	1	99.4	178
- 대변인(총액대상)	78	78	73	5	93.6	78
- 방송정책국(총액대상)	24	24	21	3	87.5	24
- 이용자정책국(총액대상)	33	33	33	-	100.0	34
- 방송기반국(총액대상)	17	17	12	5	70.6	17
- 운영지원과	896	887	760	20	85.7	598
- 기획조정관	1,270	1,452	1,301	8	89.6	714
- 대변인	45	45	42	3	93.3	47
- 방송정책국	131	131	117	2	88.9	107
- 이용자정책국	145	145	140	-	96.5	153
- 방송기반국	125	117	95	11	81.2	100
○ 소속기관기본경비	426	399	350	30	82.2	426
-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총액대상)	106	106	92	13	87.7	106
-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320	293	257	17	87.7	320
○ 방송통신운영지원	4,921	4,875	4,608	267	93.6	4,408
- 국내외협력업무수행	635	635	574	61	90.4	442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6	306	287	19	93.8	361
- 공익채널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34	234	234	-	100.0	237
- 법정위원회운영	144	144	131	13	91.0	202
-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973	973	946	27	97.2	969
-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256	210	108	102	51.4	185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256	1,256	1,248	8	99.3	841
-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	1,117	1,117	1,080	37	96.7	1,171

주: 집행률 = 집행액 / 예산현액

* 예산현액= 예산 + 이월(317백만원)

○ 2024년에 이용(移用)은 없었으나 전용(轉用)은 145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전용 사유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부족분에 따른 자체전용임.

< 전용 내역(2024) >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 -세부사업	전용 증액		프로그램 -세부사업	전용 감액	
		세 목	금 액		세 목	금 액
자체 전용	기획조정관 (7111-212)	일반연구비 (260-01)	5	기획조정관 (7111-212)	일반수용비 (210-01)	△5
자체 전용	기획조정관 (7111-212)	일반수용비 (210-01)	13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직책수행경비 (250-02)	△13
자체 전용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17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상용임금 (110-03)	△17
자체 전용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11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일용임금 (110-04)	△11
자체 전용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13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7111-202)	상용임금 (110-03)	△13
자체 전용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고용부담금 (320-09)	13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상용임금 (110-03)	△13
승인 전용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5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7118-251)	일반수용비 (210-01)	△5
승인 전용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22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7118-251)	임차료 (210-07)	△22
승인 전용	방송통신사무소 인건비 (7101-101)	보수 (110-01)	30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7131-306)	일반수용비 (210-01)	△30
승인 전용	방송통신사무소 인건비 (7101-101)	보수 (110-01)	16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7131-306)	임차료 (210-07)	△16

3. 방송통신발전기금

가. 일반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³⁾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방송인프라지원,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며, 기금운용·관리의 주된 사무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 중 자체수입은 방송사업자 부담금, 주파수할당대가 및 용자대여금 회수 등으로 구성됨. 이 중 방송사업자 부담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사업자 별로 각각 징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 16. (이하 생략)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로부터 각각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은 각각 9,786억원이며,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비로 2,005억원이 집행되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실적(2024) >

(단위: 백만원)

부 처	소 관	수 입 (978,618)	지 출 (978,618)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종편·보도PP	자체수입 (616,523)	방통위 사업비 (200,4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O, 홈쇼핑, 위성방송, IPTV 등	정부내부수입 (343,309)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 등 (78,579)
		여유자금회수 (18,786)	과기부 사업비 (699,561)

나. 자금 조달

- 2024회계연도 기금 조달액은 9,786억원으로 계획액 9,888억원 대비 102억원(1.0%) 감소하였음. 이는 방송사업자 매출액감소 등으로 법정부담금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24년) 사업비 감소에 따른 정산잔액 감소로 기타경상이전 수입이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함.
- 기금 조달액의 세부내역은 방송사업자 부담금, 주파수할당대가 및 용자대여금 회수 등 자체수입이 6,165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정부내부수입이 3,433억원, 여유자금회수가 188억원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재 원		2024			2025
			계 획	수 정	실 적	계 획
자체수입	법정 부담금	방송사업자 분담금	197,350	159,758	157,560	157,223
		주파수할당 대가	411,821	411,821	420,809	406,110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등		5,294	5,294	10,131	5,320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49,858	49,858	28,023	70,125
소 계			664,323	626,731	616,523	638,778
정부 내부수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263,309	343,309	343,309	177,258
소 계			263,309	343,309	343,309	177,258
보전수입	여유자금 회수		325,042	18,786	18,786	54,414
소 계			325,042	18,786	18,786	54,414
총 계			1,252,674	988,826	978,618	870,450

주 : 2024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 방송사업자 부담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앙지상파, 지역지상파, 라디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이하 “중편·보도PP”(Program Provider)]의 부담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담금을 각각 징수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제2항·제3항·제4항).⁴⁾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부과한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광고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하여,⁵⁾ 중앙지상파 방송사업자는 0.38~4.21%,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는 0.23~1.15%,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0.01~1.20%, DMB 사업자는 0.06%, 중편·보도PP는 1.55~3.43%임.

4) 징수율은 통상 징수금 고지서 발급(8.31.) 기준 한 달 전에 결정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분담금의 징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언론의 독립성·중립성을 고려하여 보도 부문을 제외하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함. 반면, 보도 기능이 없는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의 경우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을 부과기준으로 함.

< 2024년도 부과 분담금 징수율(방송통신위원회) >

(단위: %)

중앙4사 지상파 (0.38~4.21)		안동 MBC	0.37	평화방송	0.16
		원주 MBC	0.23	기독교방송	1.20
KBS	1.12	포항 MBC	0.32	원음방송	0.09
EBS	0.38	MBC 강원영동	0.78	극동방송	0.18
MBC	4.11	이상 MBC 지사		교통방송	0.02
SBS	4.21	OBS	0.66	광주영어	0.01
지역지상파 (0.23~1.15)		KNN	1.15	부산영어	0.01
		TBC방송	1.09	DMB (0.06)	
부산 MBC	0.70	광주방송	1.03	YTN DMB	0.06
대구 MBC	0.80	대전방송	0.86	종편·보도PP (1.55~3.43)	
광주 MBC	0.83	전주방송	0.56		
대전 MBC	0.76	청주방송	0.51		
전주 MBC	0.57	울산방송	0.62	JTBC	1.55
MBC 경남	0.84	G1	0.70	채널A	2.53
춘천 MBC	0.24	제주방송	0.56	매일방송	2.94
MBC 충북	0.52	라디오 (0.01~1.20)		조선방송	3.43
제주 MBC	0.44			YTN	2.38
울산 MBC	0.48	경인방송	0.07	연합뉴스TV	2.49
목포 MBC	0.41	YTN라디오	0.17		
여수 MBC	0.40	불교방송	0.42		

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14호)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도에 부과한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사업 매출액을 부과 기준으로 하여(홈쇼핑사업자는 방송사업 관련 영업이익)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TV 사업자, IPTV 사업자는 1.5%, 홈쇼핑사업자는 10~13%임.

< 2024년도 부과 분담금 징수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단위: %)

사업자	SO	위성TV	홈쇼핑사업자	IPTV
징수율	1.5	1.5	1.TV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 사용사업 겸업자 포함) : 13.0 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10.0	1.5

자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92호)

다. 자금 운용

○ 2024회계연도 기금 운용액은 기금 조달액과 동일한 9,786억원으로 계획액 9,888억원 대비 102억원(1.0%) 감소하였음. 이는 수입 감소에 따른 여유자금운용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에 지출된 기금 운용액(사업비)은 2,005억원으로 계획현액 2,011억원 대비 6억원(0.3%) 감소하였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달 및 운용(2024) >

(단위: 백만원, %)

과 목		계 획	계획현액(A)	실 적(B)	비 율(B/A)
사업비	방통위	201,142	201,142	200,478	99.67%
	과기 정통부	700,061	700,061	699,561	99.93%
	합 계	901,203	901,203	900,039	99.87%
기금운영비		4,219	4,219	4,168	98.79%
정부내부지출		38,154	41,035	41,035	100%
여유자금운용		309,098	42,369	33,376	78.77%
합 계		1,252,674	988,826	978,618	98.97%

주: 여유자금운용 중복계상분 제외, 2024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비를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은 계획현액 1,798억 1,000만원 중 1,791억 4,900만원(99.6%)을, ‘안전한 인터넷활용 기반구축’은 계획현액 213억 3,200만원 중 213억 2,900만원(99.9%)을 집행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비 결산(2024) >

(단위: 백만원, % /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구 분	2024						2025
	계획	계획 현액	집행	이월	불용	집행률	계획
□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KCC)	179,810	179,810	179,149	-	661	99.6	173,364
○ 방송인프라지원	61,710	61,710	61,710	-	0	100.0	58,228
- EBS프로그램제작지원	32,774	32,774	32,774	-	0	100.0	30,064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13,430	13,430	13,430	-	0	100.0	12,070
- 국악방송지원	5,842	5,842	5,842	-	0	100.0	5,258
- KBS대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5,034	5,034	5,034	-	0	100.0	6,272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530	4,530	4,530	-	0	100.0	4,464
- AM라디오 송출지원	100	100	100	-	0	100.0	100
○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78,025	78,025	77,419	-	606	99.2	76,152
- 미디어다양성증진	3,290	3,290	3,290	-	0	100.0	3,290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468	468	468	-	0	100.0	457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20,176	20,176	20,176	-	0	100.0	21,870
- 언론중재위원회지원	13,802	13,802	13,802	-	0	100.0	14,545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36,560	36,560	36,052	-	508	98.6	33,040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 기반구축	1,770	1,770	1,770	-	0	100.0	1,640
-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632	632	622	-	10	98.4	565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300	300	-	0	100.0	270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1,027	1,027	939	-	88	91.4	475
○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23,133	23,133	23,099	-	34	99.9	23,709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1,468	1,468	1,444	-	24	98.4	1,276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21,665	21,665	21,655	-	10	99.9	22,433
○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9,656	9,656	9,643	-	13	99.9	8,285
- 방송콘텐츠 기반 강화	310	310	297	-	13	95.8	290
- 방송평가기반조성	871	871	871	-	0	100.0	850
-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2,449	2,449	2,449	-	0	100.0	1,932
-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2,356	2,356	2,356	-	0	100.0	1,883
-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202	202	202	-	0	100.0	452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2,868	2,868	2,868	-	0	100.0	2,278
- OTT산업 경쟁력 강화	600	600	600	-	0	100.0	600
○ 방송통신운영지원	7,286	7,286	7,278	-	8	99.9	6,712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2,400	2,400	2,392	-	8	99.7	2,400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148	2,148	2,148	-	0	100.0	1,626
- 재난방송 운영지원	2,738	2,738	2,738	-	0	100.0	2,686
□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21,332	21,332	21,329	-	3	99.9	20,442
○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 구축	21,332	21,332	21,329	-	3	99.9	20,442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1,400	1,400	1,400	-	0	100.0	1,360
-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	1,629	1,629	1,629	-	0	100.0	1,466
- 건전한사이버윤리문화조성	6,463	6,463	6,463	-	0	100.0	6,140
- 지능정보화이용자기반보호환경조성	830	830	830	-	0	100.0	792
-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1,970	1,970	1,970	-	0	100.0	1,920
-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4,662	4,662	4,662	-	0	100.0	4,195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3,230	-	0	100.0	3,370
-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1,148	1,148	1,145	-	3	99.7	921
-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	-	-	-	-	-	-	278

주: 집행률 = 집행액 / 계획현액

○ 지원대상 별로 살펴보면, 방송사(KBS·EBS·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지역 중소방송·AM라디오)에 총 617억 1,000만원(30.8%)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에 715억 900만원(35.7%)이, 그 밖의 사업비로 672억 5,900만원(33.5%)이 각각 집행되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대상별 집행 내역(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결 산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계	201,142	100.0	200,478	100.0
방송사 지원1)	61,710	30.7	61,710	3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지원	72,027	35.8	71,509	35.7
그 밖의 사업	67,405	33.5	67,259	33.5

주: KBS, EBS,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지역중소방송, AM라디오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1건으로,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세부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비목을 민간경상보조 비목으로 변경해서 충당하였음.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획액	증감내역		계획현액
		증액	감액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1,665	-	-	21,665
○ 비목별 분류(계)	21,665	-	-	21,665
· 민간경상보조(320-01)	21,205	200	-	21,405
· 민간자본보조(320-07)	460	-	200	260

마. 재무 상태

-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4,886억 2,3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457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함.
- 2024년 말 기준 부채는 1조 9,051억 1,1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2,192억원이 증가하였음. 2024년 말 기준 순자산액은 △1조 4,164억 8,800만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34억 8,6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정운영결과 1,734억 8,300만원 손실 발생 등에서 기인함.

< 방송통신발전기금 재무상태(2024년 말) >

(단위: 백만원)

과 목		금 액		
		2024(A)	2023(B)	증감(A-B)
자산	자 산	488,623	442,908	45,715
	- 유동자산	64,426	51,641	12,785
	- 비유동자산	424,197	391,267	32,930
부채 및 순자산	부 채	1,905,111	1,685,911	219,200
	- 유동부채	252,357	352,998	△100,641
	- 비유동부채	1,652,754	1,332,913	319,841
	순 자 산	△1,416,488	△1,243,002	△173,486
	- 적립금 및 잉여금	△1,443,408	△1,269,925	△173,483
	- 순 자 산 조 정	26,920	26,923	△3
	부채 + 순자산	488,623	442,908	45,714

Ⅱ. 검토의견

1. 기획조정관 소관

<일반회계>

1) 벌금 및 과료(56-561), 과태료(56-563), 가산금(58-581): 수납률의 연례적인 저조 개선 필요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에서 연례적으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과태료 등과 관련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벌금 및 과료(56-561)는 2010년 이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 전송 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3%임.
- 과태료(56-563)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른 영리성 광고 법규 위반 등 방통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세입과목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2%임.
- 가산금(58-581)은 법령 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0.6%임.

<2024년도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세입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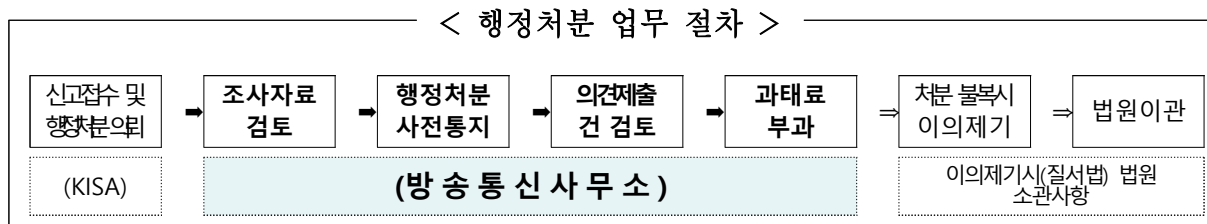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목명	2024년								2025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 벌금 및 과료	6	6	-	6	13,311	39	12,817	455	6
☐ 과태료	4,022	4,022	-	4,022	40,328	3,321	35,121	1,886	4,077
☐ 가산금	141	141	-	141	30,606	197	28,950	1,459	18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불법스팸 과태료 등과 관련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신고를 접수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사항 확인 시 방송통신사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방송통신사무소는 조사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피신고인이 과태료에 불복하여 이의제기하면 관할 법원으로 이관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⁶⁾

- 이의제기로 인하여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⁷⁾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등의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에 대한 개선 필요

○ 불법스팸 전송 등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의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2018년 9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방통위가 이관받았고, 당시 승계한 미수납채권⁸⁾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임.

<최근 3년간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세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목명	연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
							거소 불명	채납자 무재산	
벌금 및 과료	2022	6	17,591	68	0.4	13,981	6,138	7,843	3,542
	2023	6	13,575	66	0.5	13,509	8,010	5,499	-
	2024	6	13,311	39	0.3	12,817	7,165	5,652	455
과태료	2022	3,072	45,969	3,316	7.2	36,868	16,185	20,683	5,786
	2023	4,259	40,597	3,699	9.1	36,897	21,880	15,017	-
	2024	4,022	40,328	3,321	6.6	34,485	19,277	15,208	1,886
가산금	2022	50	32,034	232	0.7	28,523	12,522	16,001	3,279
	2023	98	30,199	197	0.6	30,002	17,791	12,211	-
	2024	141	30,606	197	0.6	28,950	16,070	12,679	1,45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8) 벌금 및 과료 452억 6,400만원, 과태료 457억 2,600만원, 가산금 165억 3,900만원

- 미수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체납된 채권이 77.6%의 비중을 차지하고, 5년 이내인 채권의 비중은 6.6%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 미수납채권으로 인해 전체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임.

< 불법스팸 관련 미수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10년 이상 (~'14.12월)	5년~10년 ('15.1월~ '19.12월)	5년 이내 ('20.1월~ '24.12월)	합 계
별금 및 과료	12,817	해당없음	해당없음	12,817
과태료	23,127	7,322	4,036	34,485
가산금	23,068	4,648	1,033	28,749
합계	59,012 (77.6%)	11,970 (15.7%)	5,069 (6.6%)	76,051 (1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살펴본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나, 특히 매년 불법스팸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비율에 머물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2022년부터 2024년 부과 건의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위반조항	부과건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¹⁾	수납률
2022	50조	737건	3,321	2,239	1,082	68%
	50조의4	40건	109	86	23	
2023	50조	958건	3,596	2,375	1,221	66%
	50조의4	47건	113	70	43	
2024	50조	541건	2,216	1,542	674	71%
	50조의4	71건	216	195	21	

주1.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위반한 전송자

(제50조의4) 정보 전송 의무 제공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1) 이의제기 이후 법원 이관 결과 또는 분할 납부 등 조회 시점별로 미수납액이 변동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수납률 문제에 대해, 과태료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통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예금 압류나 추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률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장기 미수납 채권의 지속적인 독촉 및 압류·추심을 통해 수납률 개선에 노력하고, 사망자, 청산종결 법인 및 파산자 등 법령상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매년 조사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특정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 등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부처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렵고 체납이나 결손 처분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음.

- 과태료 체납처분을 행하게 될 때에는 대개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의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행정청의 실무자가 직접 독촉, 재산조사, 압류, 공매 등의 제반 절차를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압류재산의 종류가 다양하며 매각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⁹⁾
- 방통위는 불법스팸 과태료 관련 집행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2018년 9월 방송통신사무소를 신설하였으나, 수행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적 한계가 있는 상황임. 직제 상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은 총 44명이나, 실제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6~7명 수준으로, 이는 기존 14명이었던 중앙전과관리소 인력의 절반 수준임.
- 실제 압류건수는 2024년 기준 710건이나 추심이나 공매 등으로 진행되지 못해 회수액은 1억 8,100만원으로 저조한 상황임.

<2022~2024년도 연도별 압류 건수 및 채권금액, 회수액>

구분	압류건수	채권금액	회수액
2022년	809건	13,262백만원	139백만원
2023년	1,149건	13,737백만원	270백만원
2024년	710건	12,219백만원	181백만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9)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세징수법」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이는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 경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의 경우로, 일반적으로 불법스팸 과태료는 3천만원으로 위탁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결손처분을 위한 확인조사방식>

대상자	조사방식 및 증빙서류	
1. 파산자	상 태	판결문 사본(개인, 법인에게 자료 요청)으로 파산자 확인
	부동산	국토교통부 자료로 무재산 확인
	자동차	국토교통부 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행정정보공동이용)로 무재산 확인 ※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재산으로 취급
	예 금	파산결정일(결정일 포함) 이후 추심 결과 0원이면 무재산 인정
2. 사망자 중 무재산인 자	상 태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사망자 확인
	부동산	국토교통부 자료로 무재산 확인
	자동차	국토교통부 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행정정보공동이용)로 무재산 확인 ※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재산으로 취급
	예 금	사망일 이후(사망일 포함) 추심 결과 0원이면 무재산 인정
3. 청산종결 또는 청산종결 간주 법인 중 무재산인 자	상 태	법원에 등기부등본 요청하여 청산종결(청산종결간주) 확인
	부동산	국토교통부 자료로 무재산 확인
	자동차	국토교통부 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행정정보공동이용)로 무재산 확인 ※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재산으로 취급
	예 금	청산종결일(청산종결간주일) 이후 추심 결과 0원이면 무재산인정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	과태료 채권 관리 자료로 확인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따라 수납률 제고를 위해 방통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인력 충원과 함께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담당 직원
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등 가능성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한편, 이와 관련해 무분별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¹⁰⁾
- 나아가 가산금 등의 고지나 자진납부시 감면제도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관련된 간접적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10) 가령 병무청은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병무청훈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2) 본부(총액대상)(7101-101):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 부적정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임기제 증원 소요를 사전에 반영하지 않아 기타직보수(110-02)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 등을 과도하게 한 문제가 있음.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본부(총액대상)’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17억 4,000만원 중 217억 700만원(99.8%)을 집행하였음.

- 이 중 ‘기타직보수(110-02목)’는 2024년 본예산으로 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억 7,900만원을 전용·내역변경을 통해 증액해 예산현액 9억 1,100만원 중 9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본부(총액대상)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본부(총액대상)	21,672	21,672	-	68	21,740	21,707	-	33	22,545
☐ 세출예산비목									
○ 보수(110-01)	20,978	20,978	-	△271	20,707	20,695	-	12	21,211
○ 기타직보수(110-02)	532	532	-	379	911	909	-	2	1,171
○ 연가보상비(110-05)	162	162	-	△40	122	104	-	18	16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전문임기제 인건비 부족에 따른 과도한 전용 등 부적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증원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을 사유로 3억 7,900만원의 예산을 ‘보수(110-01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으로 내역변경하였고, 이에 ‘보수(110-01목)’가 부족해지자 다른 비목 등에서의 전용 및 내역변경을 통해 ‘보수(110-01목)’를 1억 800만원 증액하였음.

<본부(총액대상) 관련 내역변경 내역>

내역변경 감			내역변경 증			조정일	조정사유
사업명	비목명	금액	사업명	비목명	금액		
본부(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300	본부(총액대상) (7101-101)	기타직보수 (110-02)	300	‘24.8.20.	공무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본부(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79	본부(총액대상) (7101-101)	기타직보수 (110-02)	79	‘24.12.5.	
본부(총액대상) (7101-101)	연가보상비 (110-05)	40	본부(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40	‘24.12.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총액대상) 관련 전용 내역>

전용 감			전용 증			전용일	자체전용 여부	전용 사유
사업명	비목명	금액	사업명	비목명	금액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상용임금 (110-03)	17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17	‘24.12.5	자체전용	공무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자체 전용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일용임금	11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11	‘24.12.5	자체전용	

전용 감			전용 증			전용일	자체전용 여부	전용 사유
사업명	비목명	금액	사업명	비목명	금액			
기획조정관 (총액대상) (7111-202)	상용임금 (110-03)	13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13	'24.12.5	자체전용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7118-251)	일반 수용비 (210-01)	5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5	'24.12.18	승인전용	공무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승인 전용
방송통신사무소 기본경비 (7118-251)	임차료 (210-07)	22	본부 (총액대상) (7101-101)	보수 (110-01)	22	'24.12.18	승인전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당초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지역인재 7급 1명, 9급 1명
총 2명의 예산(약 83백만원)과 전문임기제 다급인 청년보좌역 1명
의 예산(약 62백만원)으로, 기존 인원의 처우개선율까지 하여
2023년도 대비 기타직보수는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5억 3,200
만원이었음.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1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개편,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임기제 가급 1명, 나급 5명, 다급 1명 등 총 7명을
추가로 증원하였음.

-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 3억 7,9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건비(110-01목)을 자체전용하여 집행
하였으며, 세부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2~2025년 전문임기제 연도별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
전문임기제 가	1	1	2	2
전문임기제 나	2	2	7	7
전문임기제 다	2	2	4	4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24년 전문임기제 증원 현황 및 사유>

소속	직급 (상당)	분야	정원		증원사유
			인원	기간	
대변인	가급 (4급)	정책 홍보	1	‘23.10.~’25.9. (2년)	○ 주요정책 홍보기획 및 홍보계획 수립·조정, 홍보 관련 대내외 정책협력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 추진
조사기획 총괄과	나급 (5급)	법률	1	‘23.10.~’25.9. (2년)	○ 방송통신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방송통신조사국을 별도 신설함에 따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변호사) 채용 추진
조사기획 총괄과	다급 (6급)	조사 분석	1	‘23.10.~’25.9. (2년)	○ 방송통신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방송통신조사국을 별도 신설함에 따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회계사) 채용 추진
방송시장 조사과	나급 (5급)	법률	1	‘23.10.~’25.9. (2년)	○ 방송통신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시장조사국을 별도 신설함에 따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변호사) 채용 추진
통신시장 조사과	나급 (5급)	법률	1	‘23.10.~’25.9. (2년)	○ 방송통신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방송통신조사국을 별도 신설함에 따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변호사) 채용 추진
부가통신 조사지원팀	나급 (5급)	법률	1	‘23.10.~’25.9. (2년)	○ 방송통신 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방송통신조사국을 별도 신설함에 따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변호사) 채용 추진
통신분쟁 조정팀	나급 (5급)	법률	1	‘23.10.~’25.9. (2년)	○ 늘어나는 통신분쟁에 대한 조정 실효성 제고 및 통신분쟁조정 사건 관련 법률 검토 등 업무 전문성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변호사) 채용 추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은 타 비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 등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하나, 당해연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된 인원의 보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수(110-01목)’로부터의 자체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재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고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세목조정이 가능해 세목조정을 진행하였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은 2023년 11월에 진행되었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고용기간 또한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증원과 관련된 예산소요는 2024년도 예산 확정 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임.

-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재부 협의 완료시점(2023.10.27. 통보)에서는 정부안 편성 절차가 종료되어 2025년 예산부터 편성하였다는 의견임.

1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33

가. 인건비

- 1) 타 비목에서 기타직보수(110-02목), 상용임금(110-03목), 연가보상비(110-05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단, 다음의 경우 기타직보수(110-02목)는 보수(110-01목)로부터의 자체전용이 가능하며, 증액사유 및 증감액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당해연도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인원의 보수가 부족한 경우

-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회계연도 중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전문임기제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부족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소요로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에 관련 소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안 편성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편성을 미루고 사후에 대규모 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각 비목의 용도를 엄격히 정하여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조직정책적인 변경사항 등 예측 가능한 소요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기 보다는 예산심의 단계에서 가능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연가보상비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부적절

- ‘본부(총액대상)’의 ‘연가보상비(110-05목)’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2021년 45.8%, 2022년 51.6%, 2023년 61.4%, 2024년 64.2%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연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임.

< 본부(총액대상) 연가보상비 예산 대비 집행현황(2020~2024)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불용액	본예산 대비 집행률 (C/A)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B/C)
	본예산(A)	추경						
2021년	212	212	-	212	97	116	45.8	45.8
2022년	190	154	-	154	98	56	51.6	63.6
2023년	158	158	-	158	97	61	61.4	61.4
2024년	162	162	△40	122	104	18	64.2	85.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연가보상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성격의 보수성 수당으로,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가보상비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예산 절감 등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¹²⁾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 연가보상비를 인건비 부족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적극 집행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절감재원으로 유보해두는 예산집행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가보상비 집행부진에 대해, 방통위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직원 연가보상비는 인건비에서 불가피한 사유(명예퇴직 증가 등 인건비 부족)가

1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3.

발생할 경우 투입하는 예산”으로, 실제 명예퇴직수당 등 관련 비용 등을 보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연가보상비가 불용 되었다고 설명함.

- 2024년의 경우 전문임기제 증원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부족해 지자 연가보상비 4,000만원을 보수(110-01목)으로 자체세목조정 하여 인건비로 충당¹³⁾하였고, 그럼에도 1,800만원이 불용됨.

○ 총액인건비제는 정해진 인건비 총액 내에서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가 사용장려나 초과근무 감축 등을 통해 발생한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을 인력 증원,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함.¹⁴⁾

○ 그러나 방통위의 사례는 연가보상비를 절감하여 전략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부족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 전문임기제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연가보상비로 충당한 것은 본래 절감재원을 통해 신규 인력을 증원¹⁵⁾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변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13) 전문임기제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서 지급되며, 방통위는 보수(110-01목)에서 3억 7,900만원을 기타직보수로 자체세목조정하였음.

14)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2024. 3.

15) 관련 지침은 절감재원을 통해 직제 규정된 총정원의 10%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나, 이 경우 증원된 인력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

○ 각 집행목적에 따라 인건비 세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세목간 전용이나 조정 등도 제한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현재의 회계 질서 및 예산통제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연가보상비를 본래 집행 목적과 다르게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이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유보하거나, 이를 위해 연가보상비 예산을 실제 필요보다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과도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¹⁶⁾

16)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방통위 소관 결산심의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과도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로 채택한 바 있음.

3)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구성 필요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법정기구이나 7기 위원회 만료 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동 위원회의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가) 사업개요

-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억 4,400만원 중 1억 3,100만원(91%)을 집행하였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으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의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2024년도 법정위원회 운영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법정위원회운영	144	144	-	-	144	131	-	13	20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조속한 구성 필요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는 남북 간 방송·통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정 위원회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제4항¹⁷⁾은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 추진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방통위 위원 중에서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공무원 및 방송·통신 업계, 학계 등 방송통신 및 남북관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추위를 구성하도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함.

○ 교추위는 2024년 3월 7기 위원회가 만료된 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2024년 회의실적은 없는 상황임.

- 7기 교추위는 공무원 4명,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했으며,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2022년에는 출석회의 4회, 2023년에는 서면회의 4회 등의 실적이 있었으나, 2024년에는 구성되지 않아 회의실적이 없음.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7기 구성 >

공무원 (총 4명)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통일부 교류협력 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등 4명
민간위원 (총16명)	(직 중) 방송전문 6명, 보도전문 2명, 통신전문 3명, 북한전문 3명, 법률전문 2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교추위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교추위가 구성·운영되지 않는 현재 상황은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교추위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는 절차적인 문제도 발생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¹⁸⁾는 남북 간 교류·협력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135-302)’ 사업을 통해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통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간 교류·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 사항은 시행령을 근거로 통상 교추위의 심의를 거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교추위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교추위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었고 이는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짐.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 임명 후 교추위 위원장을 지명하려 했으나, 위원회 내부 업무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추위 구성이 지연되었다고 하며, 위원회가 5인 체제가 되면 교추위도 정상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4)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3135-301): 정책연구용역의 유효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역사업인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정책연구용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문제가 연례적으로 있으므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

가) 사업개요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학술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계획액 24억원 중 23억 9,200만원(99.7%)이 집행되었음.
- 내역사업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통위 주요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 수립 전 전문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액 22억 5,000만원은 전액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음.

- 내역사업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등’은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연구 성과 확산 및 지식 공유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액 1억 5,000만원(정책연구비 1억 4,000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 중 1억 4,200만원(94.7%)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 획 현액	집 행 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2,400	2,400	-	-	2,400	2,392	-	-	2,400
○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2,250	2,250	-	-	2,250	2,250	-	-	2,250
○ 방송통신 학술행사 지원 등	150	150	-	-	150	142	-	8	150
☐ 세출예산비목									
○ 정책연구비(260-02)	2,390	2,390	-	-	2,390	2,382	-	8	2,390
○ 일반수용비(210-01)	10	10	-	-	10	10	-	-	1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정책연구용역의 유효한 경쟁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내역사업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은 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40건의 용역이 수행되었으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최근 동 사업을 통한 5년간 정책연구과제 입찰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의 과제의 비중이 2020년 66.7%, 2021년 71.8%, 2022년과 2023년 67.6%, 2024년은 72.5%로, 전체 과제의 2/3 이상이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 또한 2024년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11건의 경우에도 8건은 2:1, 3건은 3:1에 경쟁률에 불과하였음.

< 최근 5년 정책연구과제 경쟁·단독입찰 현황(2020~2024) >

(단위: 건, %)

연도	전체 과제 건수	경쟁입찰		단독입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36	12	33.3	24	66.7
2021	39	11	28.2	28	71.8
2022	37	12	32.4	25	67.6
2023	37	12	29.6	25	67.6
2024	40	11	27.5	29	72.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예산집행지침은 정책연구비(260-02목)를 집행할 때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¹⁹⁾ 이는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불필요한 정책연구의 수행을 지양하고 경쟁계약을 통해 경쟁력 있는 수행기관이 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2024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사업의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용역 40건 중 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4건(35%),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6건(15%)으로 두 기관이 전체 연구용역과제의 절반을 수행하고 있음.
- 수의계약 비중이 높음과 동시에 특정 기관 및 연구자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의 다양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연구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재검토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학회 등이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²⁰⁾

19)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6.

20)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방통위 소관 결산 심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융합기반 정책연구’사업의 정책연구비에 대한 수의계약 비중이 67.6%에 달하는데, 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며,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 다양한 업체의 참가를 위해 충분한 입찰공고기간을 둘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²¹⁾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공고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²²⁾ 미만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위한 제안서 작성 등 참가자들이 입찰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 그러나 2024년도 동 사업을 통한 정책연구용역의 공고현황을 살펴보면 수시과제의 경우 공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규정에 벗어나지는 않지만 학술행사 등의 용역은 공고기간을 10일 내외로 두고 있어 법령에서 제시하는 최소기간을 준수하는 정도임.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2015. 6. 22.>

22) 2024년 기준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2.2억원

- 참고로 2024년 추석연휴는 9월 16일(월)부터 9월 18일(수)까지로,
2차 학술행사의 경우 공고기간이 추석연휴와 겹쳐있어 실질적
인 공고기간은 보다 짧다고 볼 수 있음.

<2024년도 정책연구용역 공고현황>

최초공고				재공고			
발주건수	게시일자	마감일자	공고기간	발주건수	게시일자	마감일자	공고기간
정기과제 37건	3.27	5.7	40	단독입찰한 29건 재공고	5.8	5.20	11
학술행사 1차 4건	4.8	5.8	29	단독입찰한 2건 재공고	5.9	5.20	10
수시과제 3건	7.22	8.1	9	단독입찰한 1건 재공고	8.2	8.12	9
학술행사 2차 2건	9.12	9.23	10	단독입찰한 1건 재공고	9.25	10.8	12
학술행사 3차 1건	9.30	10.11	10	-			
학술행사 4차 1건	10.30	11.11	11	-			

자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바탕으로 재작성

- 현재 동 사업은 단독입찰로 인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수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입찰공고
기간을 충분히 둘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방송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5) EBS 방송인프라 개선(2171-303): UHD 전환 문제 개선 필요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해 현실적인 UHD 방송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UHD 송출실적이 전무한 문제와 관련해, 지상파 UHD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맞춰 UHD 송출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실효성과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로드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노후 방송 장비, 시스템을 보완하고 UHD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송 인프라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교육방송을 안정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액 13억 2,200만원 중 9억 8,300만원 (74.4%)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수행기관(EBS)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EBS 방송인프라 개선	1,322	1,322	983	983	-	983	983	-	-	1,210
○ 방송제작시스템	730	730	511	511	-	511	511	-	-	655
○ 네트워크시스템	592	592	472	472	-	472	472	-	-	555
☐ 세출예산비목										
○ 민간자본보조 (320-07)	1,322	1,322	983	983	-	983	983	-	-	1,21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UHD 전환 계획의 현실화 필요

○ EBS는 정부의 UHD방송 도입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UHD 송출시스템, UHD 제작시스템, UHD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하여 연도별로 투자하고 있음.

- 2015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0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UHD 송출시스템, UHD 제작시스템, UHD 네트워크시스템 등에 투자하고 있고, 2027년까지 보조금 522억 3,200만원, EBS 자체재원 100억 2,800만원 등 총 622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연도별 투자 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투자한 총 금액은 196억 5,000만원이고, 향후 2025~2027년 3년간 계획된 투자금액은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426억 1,000만원임.

- 해당 연도별 투자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전체 투자액의 5.5% 이하의 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2026년에는 한해에만 전체 투자액의 42.1%인 262억 6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EBS UHD 방송인프라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실적)	'22년 (실적)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 (계획)	'26년	'27년	합계
재 원	보조금	-	1,236	3,297	2,799	2,245	2,148	1,915	1,603	983	1,210	23,304	11,492	52,232
	자체	187	1,248	-	46	-	-	1,482	292	169	276	2,902	3,426	10,028
합계 (비중)		187 (0.3)	2,484 (4.0)	3,297 (5.3)	2,845 (4.6)	2,245 (3.6)	2,148 (3.5)	3,397 (5.5)	1,895 (3.0)	1,152 (1.9)	1,486 (2.4)	26,206 (42.1)	14,918 (24.0)	62,260 (100)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렇게 9년 동안의 실적보다 향후 3년간 계획된 금액이 2배 이상 큰 것은, 2015년에 설정한 ‘UHD 방송인프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2027년까지 기계적으로 나누어 배분했기 때문임.
-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2018년 32억 9,700만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현실적으로 2026년 233억원, 2027년 115억원 규모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EBS가 30억원 내외의 자체재원을 확보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27년 종료 예정인 현재의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EBS는 현재 UHD 프로그램 송출건수가 전무한 상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UHD 전환이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UHD 방송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 EBS의 UHD 방송망 구축 지연문제 해결 노력 필요

- 2015년에 발표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서는 EBS의 경우 통합사옥 구축 일정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UHD 본방송 개시를 계획하였음.
- 이에 EBS는 동 사업을 통해 도입한 UHD장비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비 144억 8,700만원을 투입해 132편의 UHD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으나, EBS UHD 방송은 개시되지 못했고 배정받은 전국 방송용 주파수 54번도 방송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EBS는 현재까지 제작한 UHD 프로그램을 화질을 낮춰 HD 방식으로 송출하는 중임.

< EBS 연도별 UHD 프로그램 제작·송출 내역 >

(단위: 백만원, 편,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제작비	926	2,878	2,391	1,387	1,255	750	1,627	1,800	1,472	14,487
제작편수	29	22	16	9	11	8	12	13	12	132
HD송출건수	29	22	16	9	11	8	12	13	12	132
UHD송출건수	0	0	0	0	0	0	0	0	0	0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 이는 UHD 송신비용에 대한 KBS-EBS간 이견으로 인한 것임.

- 「방송법」 제54조제1항제6호²³⁾는 KBS의 업무 중 하나로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 관련 KBS와 EBS는 EBS 방송의 송신비용에 대한 KBS의 부담 범위에 대해 견해가 다름. EBS는 송신지원 범위에는 UHD 송신지원 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HD방송에서도 KBS가 송신설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였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KBS는 동 개념에 지상파 송신망 구축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EBS의 UHD 송신비용을 KBS가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재 KBS의 UHD송신기도 재원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임.²⁴⁾
- 동 문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UHD 송신지원 관련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KBS와 EBS를 중재하였고,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정부안)을 2020년 7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KBS 재허가에 관련하여 권고사항을 부가²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임.

23) 「방송법」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24) KBS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2032년까지 UHD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창원, 강릉, 목포, 순천, 안동, 원주, 진주, 충주, 포항 KBS에서 UHD가 미구축된 상태임.

25)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UHD방송국 재허가 시 권고사항 부가내용(2024.1.31.)

o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KBS의 EBS UHD 방송 송신지원 관련하여 EBS와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 등 KBS, EBS 간 UHD 송신지원 관련 조치내용>

일시	기관명	주요내용
2016년 11월	방송통신 위원회	<UHD 신규허가(2016.11.11. 제63차 전체회의)> KBS에 대하여 「EBS의 UHD 채널 송신지원에 대하여 EBS와 조속히 합의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 함을 허가조건으로 부과
2017년 10월	감사원	<한국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송신 지원 부적정’ 지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에게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송신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가 UHD 교육방송의 송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을 통보
2019년 12월	방송통신 위원회	<KBS 수도권 UHD 방송국 재허가> 권고사항으로 「EBS와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을 명시
2024년 1월	방송통신 위원회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KBS UHD 권고사항으로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KBS의 EBS UHD 방송 송신 지원 관련하여 EBS와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 명시

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 그러나 EBS의 UHD 송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악화되는 방송환경 속에서 KBS나 EBS에게 모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통위 중재 노력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장기화된 상태임.

- 참고로, KBS는 경영여건 악화로 2023년으로 계획하였던 8개 지역국의 UHD 방송 구축 및 개국계획을 순연하였고, 2032년까지 UHD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 KBS는 미구축 8개 KBS 지역국에 송출시설 및 송신시설을 설치하는데 268억원이 소요되고, EBS UHD를 개국할 경우 주조정실 구축에 36.8억 원, 35개소 송·중계소 기준 398.5억 원 등 총 43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35개소에 대한 연간 수선유지비용은 4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지상파 UHD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 추산 >

(단위: 억 원)

구 분	송출시설 (주조정실)	송신시설 (송·중계소)	합계	비고
KBS	64	204	268	8개 지역국
EBS	36.8	398.5	435.3	

자료: 지상파유에이치디방송추진협회,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UHD 지상파 방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2024.12.

- 이와 관련해서 다채널 공동송신(MMS, Multi-Mode Service)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⁶⁾

- 차세대 지상파 방송표준인 ATSC 3.0 기술은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으로 전송하며 하나의 6MHz주파수 대역폭을 여러 개의 물리계층파이프(PLP)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하나의 주파수로 2개의 UHD 방송 채널을 동시에 송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함.²⁷⁾

26)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지상파유에이치디방송추진협회),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한 UHD 지상파 방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2024.12.

- 즉, 이미 어느정도 전국망이 구축된 KBS2의 UHD 송신망을 공유하여 EBS UHD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으로, 초기 투자비용 없이 기존 송신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MMS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ATSC 3.0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화질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주파수 대역폭을 활용해 다양한 IP 기반 부가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KBS 입장에서는 EBS와 채널을 공유하는 것이 단순한 공간 분할을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양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또한 한정된 6MHz 대역폭을 두 방송사가 나누어쓰면 각 채널에 할당된 데이터 전송률이 낮아져 UHD 콘텐츠 또한 화질을 낮추어 송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EBS 입장에서는 특정 방송사에 종속되는 듯한 인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 EBS는 KBS의 주파수와 송신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형태가 되어 지상파 방송사가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유사한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는 문제를 지님.

27) 전성호, 경일수. (2016). Special Report - 방송망 구축을 위한 ATSC 3.0 전송 기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종합하면 MMS 방식은 현재 EBS의 UHD 방송 문제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방송사 간의 이해관계와 법적 지위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저조한 UHD방송 수신률, 방송사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OTT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한 효용성 부재 등으로 인해 현재 지상파 UHD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는 상황²⁸⁾으로,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실패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EBS의 UHD 송출망 구축 문제에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항과 관련해 미디어 환경변화, 지역방송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한 UHD 방송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맞춰 현재 EBS UHD 송출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실효성과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28) 이훈기의원실·미디어오늘 공동주최, 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마련 토론회, 2025.2.24.

필요가 있음.²⁹⁾

29) 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의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UHD 정책 마련에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 지역방송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현실적인 UHD 방송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가 의결한 EBS UHD 방송 송출 관련 3가지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 바, 추후 OTT 활성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저하, 지상파 경영 상황 악화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6)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
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보조사업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난 보조금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은 신속한 재난방송과 국가차원의 방송재난 관리를 통해 방송서비스의 안정성 및 연속성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터널 및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동 세부사업의 2024년 예산액 12억 5,600만원 중 12억 4,800만원(99.3%)이 집행되었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 확보를 위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0억원이 보조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액 교부되었고, 이 중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행액은 9억 7,400만원(97.4%)임.

<2024년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수행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256	1,256	1,248	1,000	-	1,000	974	-	26	841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1,000	1,000	1,000	1,000	-	1,000	974	-	26	585
☐ 세출예산비목										
○ 민간경상보조 (320-01)	1,000	1,000	1,000	1,000	-	1,000	974	-	26	58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할 필요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재난 및 민방위 경보 방송(라디오, DMB) 수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액 민간보조금을 지급하여 수행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은 ①수신환경 실태조사, ②음영지역 기술지원, ③ 중계설비 설치지원 등 3개의 내내역사업³⁰⁾으로 구성되며,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도로·철도터널 및 지하철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공고를 한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기관과 50:50의 매칭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음.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2조제1항³¹⁾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의 “일방사항” 제2항에서 보조사업 목적인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1조³²⁾는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30) 내내역사업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신환경 실태조사)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터널, 지하공간)의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및 운용현황 파악
- (음영지역 기술지원)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불량인 터널 대상 기술지원을 통하여 음영지역 해소
- (중계설비 설치지원) 도로, 철도터널, 지하철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3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제21조(사업비 불인정) 주무부서 또는 검증기관은 사업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 그러나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동 보조사업을 통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률검토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2024년 10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되어, 터널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비용의 국가 지원 범위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두었음.

- 이에 방통위는 2025년 4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설치지원 대상 규정이나 설치지원 조사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였는데,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회의비 등의 명목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에 약 1,000만원 가량을 보조사업비로 집행하였음.

< 방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지출 내역 >

구 분	비목	집행액
○ 법률검토 관련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210-01)	980만원
○ 법률검토 관련 회의개최비 등	업무추진비(240-01)	62만 9,800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내역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보조사업으로, 동 규정은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비용에 대해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사업 계획서 등은 수신상황에 대한 조사 및 설치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재난 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의 내용(지원 대상의 범위, 기준 및 실태 조사의 방법·절차 등)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방향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동 보조사업을 통해 관련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등은 부처의 정책 및 법령추진과정에서 정책연구, 관련 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협회가 부처의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마련하는 경우라도 이는 협회의 기본업무이고 동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는 점에서 법률검토는 기관 자체경비 등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목적 범위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7) 국악방송지원(3131-304):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한 방송편성 프로그램 등 제작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악방송은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게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범위에 맞춰 보조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국악방송지원’ 사업은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전통문화예술 관련 라디오 및 TV 정규프로그램 제작과 더불어 공연 실황 영상콘텐츠화, 지역문화 소재의 로컬 프로그램 제작, 공익 캠페인 편성,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전통문화 관심 고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로 민족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동 사업의 2024년 계획액은 58억 4,200만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자인 국악방송에 교부하였고, 국악방송은 이 중 57억 8,500만원을 실집행(99.0%)하였음

<2024년도 국악방송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수행기관(국악방송)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국악방송지원	5,842	5,842	5,842	5,842	-	5,842	5,785	-	57	5,258
☐ 세출예산비목										
○ 민간경상보조 (320-01)	5,842	5,842	5,842	5,842	-	5,842	5,785	-	57	5,25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한 방송편성프로그램 등 제작 필요

○ 동 보조사업의 목적은 ‘상업방송에 소외된 국악 관련 방송편성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의 방송복지 실현’으로, 국악방송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2조제1항³³⁾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춰 보조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국악방송의 2024년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출하였음.

³³⁾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LG헬로비전과 국악방송이 공동제작한 ‘엄홍길의 산악버스’는 지역 명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산악인 엄홍길, 산악 유튜버 오세진 작가 등이 출연하였음.
-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국악방송이 공동제작한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는 방송인 진행자와 지역 리포터가 함께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배우 이정진, 이준혁, 안석환, 서태화, 안내상 등이 출연하였음.

<2024년도 일반용역비 지출 내역 중>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일자	지출 내역		지출금액
1	2024.06.28	(주)엘지헬로비전	국악방송, LG헬로비전 공동제작 <엄홍길의 산악버스>	37
2	2024.07.12	(주)엘지헬로비전		55
3	2024.08.14	(주)엘지헬로비전		73
4	2024.08.27	(주)엘지헬로비전		18
5	2024.12.16	(주)서경방송	중소SO발전연합회 소속 8개사 및 PP 7개사 공동제작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33
합 계				21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악방송은 지역문화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지역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견이지만, 동 보조사업의 목적인 국악 및 전통문화 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보임.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악방송은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게 해당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일정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8)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3132-317):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는 예산편성 부적절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과 같이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 국민 정보 판별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세부사업의 2024년 계획액 10억 2,700만원 중 9억 3,900만원(91.4%)이 집행되었고, 이 중 6억 2,800만원(61.1%)이 실집행되었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은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통·확대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나 활용가능한 기술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 기반을 확충하려는 사업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내역사업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하여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계획액 3억 5,700만원 중 2억 7,000만원(75.6%)이 집행되었고, 이 중 1,200만원(3.4%)이 실집행되었음.

<2024년도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수행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1,027	1,027	939	939	-	939	628	-	399	475
○팩트체크 활성화	357	357	270	270	-	270	12	-	258	-
☐ 세출예산비목										
○ 민간경상보조 (320-01)	357	357	270	270	-	270	12	-	258	47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는 예산편성 부적절

○ 내역사업 ‘팩트체크 활성화’는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확대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나 활용가능한 기술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2020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원은 하되,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운영원칙을 세우고 팩트체크 기관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팩트체크 과정과 검증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는 식으로 계획하였음.

-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이 공동 출연·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을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식으로 사업수행체계를 설계하였음.

○ 그러나 팩트체크넷과 관련하여, 2021년에 5억 4,000만원, 2022년에 6억 1,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2023년에는 계획액 3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에는 계획액 3억 5,700만원 중 2억 7,000만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교부하였고,

이 중 1,200만원만 실행된 상황임.

< 팩트체크넷 관련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집행액
540	540	614	614	300	0	357	1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팩트체크넷 관련 예산이 2023년부터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선정한 팩트체크넷 운영자인 “(재)팩트체크넷”이 2023년 1월 25일에 해산하였기 때문임.

< 팩트체크넷 해산 등 진행 상황 >

일자	주요경과
2023.01.25	(재)팩트체크넷 이사회 해산 결의
2023.02.02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2023.02.15	해산신고
2023.02.28	팩트체크넷 서비스 종료
2023.08.31.	잔여재산 처분허가
2023.10.16.	(재)팩트체크넷 청산인, 팩트체크 플랫폼 등 잔여재산 기부약정서 제출
2023.10.31.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플랫폼 등 잔여재산(기부물품) 체납결정 통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기존 사업자인 (재)팩트체크넷의 해산이 2023년 1월에 있었고, 이에 따라 2024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계획액을 편성하였고 2024년 사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팩트체크넷의 해산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2024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후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2024.3.)하였으나, 사업 지속 추진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2024.6)하였다고 함.
- 그러나 팩트체크의 객관성·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동 내역사업은 수행기관이나 사업추진방식이 특히 중요한 사업으로, 기존 수행주체가 해산된 상황임에도 적절한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염두없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결국 사업중단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구체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과 같이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³⁴⁾

34)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과 같이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음.

4. 방송기반국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9) OTT산업 경쟁력 강화(3134-341): 사업방식의 재설계 필요

- 동 사업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기금의 수혜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나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임.

가) 사업 개요

- OTT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국내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OTT 포럼 개최’,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를 추진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 2024회계연도 계획액 6억원이 전액 교부되었고, 이 중 5억 5,200만원이 실집행(92.0%)되었음.
-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비공모)하여 추진함.

<2024년도 OTT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수행기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OTT산업 경쟁 력 강화	600	600	600	600	-	600	552	-	48	600
☐ 세출예산비목										
○ 민간경상보조 (320-01)	600	600	600	600	-	600	552	-	48	60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사업 수혜대상,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 재설계 필요

○ 동 사업을 통해 2024년도에는 ‘제3회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하였고, 8개국³⁵⁾에 대해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방통위는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성과를 제시함.

- ‘제3회 국제 OTT 포럼’을 통해 국내외 OTT사업자 비즈니스 미팅을 성사(5건)하였고, 신흥 미디어 강국(중동), 유관 콘텐츠 사업(FAST 등) 등 주제를 다각화하였음.

35) 시장조사: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 / 이용행태조사: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 ‘해외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는 조사대상 국가 선정 및 조사 문항 기획단계부터 OTT 사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진행하여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수혜대상과 관련된 문제로, 동 사업은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수혜가 기금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집중된 측면이 있음.

- 사업 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해외시장 및 이용행태 조사는 국가 선정 등 기획단계부터 OTT 사업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그 결과는 웨이브나 티빙 등 특정 대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동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의 성격을 가져 보편적 산업 지원이라는 공익적 명분이 약화됨.

- 이는 동 사업의 재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점과도 연관됨. 방발기금은 지상파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주파수경매대가로 조성되나, OTT 사업자는 기금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둘째, 해외시장조사의 경우 동 사업이 아니더라도 타 부처 등에서 진행하는 관련 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³⁶⁾ 동 사업은 단순히 시장조사에 그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현실적으로 콘텐츠와 플랫폼은 분리될 수 없고 OTT 플랫폼의 경쟁력은 결국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매력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플랫폼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OTT 해외시장조사 등만을 진행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가령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2024년 기준 742억원)’ 사업을 통해 국내 콘텐츠산업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수출확대 등을 지원함. 동 사업은 대형 한류종합행사, K-콘텐츠 엑스포 등을 진행하여 B2B, B2C 교류를 주선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30여개의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함.

36) 추가로 티빙, 웨이브 등은 모두 대기업 계열의 OTT서비스로, 기업의 전략적 판단하에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면 해외시장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도별 비즈니스센터 설립 현황 >

설립시기	2022년 이전 (10개소 운영)	2023년 (5개소 신설)	2024년 (10개소 신설)	2025년 (5개소 신설)
지역	미국(LA), 중국(북경, 심천), 일본(동경), 인도네시아, 프랑스, 베트남, UAE, 태국, 모스크바	미국(뉴욕), 영국, 독일, 멕시코, 인도	캐나다, 스페인, 일본(오사카), 싱가포르, 스웨덴,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호주, 브라질,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폴란드, 칠레, 미국(댈러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2년부터 K-콘텐츠에 대한 소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해외 한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결과는 방통위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⁷⁾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 및 국내외 OTT에 대한 동향분석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국내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경쟁력은 국내 OTT 플랫폼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초점을 ‘플랫폼’ 중심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지상파 보유 IP활용’ 등 방송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혜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³⁸⁾

37) 방통위의 ‘해외 OTT 이용행태 조사’와 문체부의 ‘해외 한류 실태조사’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K-콘텐츠 이용행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설문 항목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다만, 방통위 조사는 K-OTT에 대한 이용의향 질문 등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직접적인 설문조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점은 있음.

38) 이와 관련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콘텐츠 진흥(방송통신발전기금, 1131-301)’ 내역 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에서 ‘OTT특화형-제작지원’은 국내 방송·제작사-OTT플랫폼사 컨소시엄의 OTT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사업의 수혜대상, 효과성, 방발
기금 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6788-5226